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5041 |
|----------|-------|

발의연월일 : 2025. 12. 9.

발 의 자 : 박수민 · 김선교 · 강대식  
성일종 · 임이자 · 임종득  
김소희 · 김미애 · 구자근  
곽규택 · 이양수 · 강명구  
박성민 · 조정훈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리모델링, 재정비사업, 천재지변 등 입주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거해야 하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음.

그런데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지 않고 있어 법령의 공백이 있으므로 이를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종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입주자가 인접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여 생활환경

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도 입주자가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시행 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그 밖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의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입주자를 우선적으로 입주배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 신청 등)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다. < <u>단서 신설</u> > | 제6조(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 신청 등) -----<br>-----<br>-----<br>-----<br>-----<br>-----<br><br>----- . 다만, 입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의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입주자를 우선적으로 입주배정할 수 있다. |
| 1. · 2. (생략)                                                                                                                              | 1. · 2. (현행과 같음)                                                                                                                                                                |
| 3. <u>그 밖에</u>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 등-----<br>-----<br>-----                                                                                                                               |